

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. 27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 이유

- 건축물 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)
- 나.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다. 기타 자구 수정 등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1. 27. ~ 2. 1.(5일간)

5. 의견 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의 건 서		
1. 조 례 안	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 건	관련조문	의 건
3. 기 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(전화 : 성 명))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의장 귀하		

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**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**”를 “**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조례**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**적용하는데**”를 “**적용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하는 데**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예방 도시디자인”이란 담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범죄예방 시설”이란 건축물 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, 경보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**집앞**”을 “**집 앞**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**담양군수(이하“군수”**”를 “**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**”로, “**도시디자인**”을 “**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**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**기본계획 수립·시행등**)”을 “(**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**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**”을 “**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재원**”

조달”을 “재원 조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실시할**”을 “**할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수립시**”를 “수립 시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**연구사업**”을 “연구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)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, 1인 여성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,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**”를 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경관디자인 위원회**”를 “경관디자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관계공무원 ·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**”를 “관계 공무원 ·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”로, “**관계기관**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3.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9조 중 “**제7조**”를 “제7조와 제7조의2”로, “**관련기관 또는 단체**”를 “관련기관, 단체 또는 개인”으로, “**범위 내**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도시디자인 추진”을 “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”으로, “구축하여야 한다”를 “구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사무의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우수사례”를 “우수 사례”로, “홍보 할”을 “홍보할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담양군 포상조례」”를 “「담양군 포상 조례」”로, “포상 할”을 “포상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<u>적용하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“범죄예방”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	<u>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적용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하는 데</u>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범죄예방 도시디자인”이란 <u>담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</u> 말한다. 2. “범죄예방 시설”이란 건축물 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<u>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</u>

	<u>금장치, 정보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.</u>
제3조(기본원칙)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거주민의 <u>집 앞</u>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.	3. ----- <u>집 앞</u> ----- ----- -----.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책무) <u>담양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</u> 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	제4조(책무) <u>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</u> ----- <u>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</u> ----- -----.
제5조(<u>기본계획 수립·시행등</u>)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<u>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</u> 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	제5조(<u>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
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
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범죄예
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
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
한 기준) ① 군수는 범죄예방
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기본
계획 수립시 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
사업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
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
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
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
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
사업

<신설>

-----.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 재원 조달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할 -----.

제6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
한 기준) ① -----

--- 수립 시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
사업)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연구
사업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
<신 설>

제8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 설>

3. 4. (생략)

인정하는 사업

제7조의2(범죄예방 시설 설치지

원)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, 1인 여성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,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한다.

제8조(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
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
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경관법」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·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 등 지원)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교육지원청, 담양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

② -----

----- 경관디자인위원회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관계 공무원·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-----

--- 관계 기관 -----

-----.

제9조(사업 등 지원) ----- 제7조와 제7조의2----- 관련기관, 단체 또는 개인 -----
----- 범위-----

-----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
----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----
-----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 사무-----

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(생 략)	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<u>우수 사례</u>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<u>홍보</u>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우수 사례</u> ----- ----- <u>홍보</u> 할 --- ---.
제13조(포상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・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 <u>담양군 포상조례</u> 」에 따라 <u>포상</u> 할 수 있다.	제13조(포상) ----- ----- ----- -- 「 <u>담양군 포상 조례</u> 」----- <u>포상</u> 할 -----.